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9.
발의자 : 전용기 · 박정 · 송옥주
박해철 · 민병덕 · 이연희
이용선 · 박지원 · 최혁진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 ·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,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,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.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,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,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

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(안 제
59조의3 개정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의 제목 “(확정 판결서등의 열람·복사)”를 “(판결서등의 열람·복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확정된 사건의 판결서”를 “선고된 사건의 판결서(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,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③ <u>제2항</u>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⑤ <u>제4항</u>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 한다.</p> <p>⑥ (생 략)</p>	<p>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,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 <p>⑤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<u>제6항</u>----- ----- ---.</p> <p>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
---	---